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5. 1. 8.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6. 1. 20.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 (중복개설은 금지)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됨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한편,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됩니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 원까지 (現 1천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sup>1)</sup>은 250만 원까지 (現 150만 원)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첨 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담당 부서	법무부 법무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조아라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박준석 (02-2110-3507)



1)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li> <li>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li> </ol>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 ----- ----- -----	월 250만원-----.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 ----- -----	

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  
의 보험금

2. (생략)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  
금

가. (생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  
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  
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생략)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  
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  
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  
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1. ----- 1천5백만원 --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250만원 --  
-----

4. -----  
250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  
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  
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  
류하지 못한 금전

<신 설>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